

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

의안 번호	266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3월 31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역 주차장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어 운영기간이 2026. 1. 5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우리시로 반환되는 주차장으로서,
- 나. 전문적인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서울시설공단에 주차장 관리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9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개요

- 주차장명 : 양재역 주차장
- 위 치 : 서초구 양재동 23(강남대로 221)
- 시설규모 : 대지 $7,927.7m^2$, 연면적 $46,640m^2$ (지하4층/지상5층)
 - (주 차 장) 자주식 894면(연면적 $34,268m^2$)
 - (부대시설) 점포 69개(연면적 $12,372m^2$)

※ 민자운영 : '96. 1. 6. ~ '26. 1. 5.(30년, (주)동성종합건설 및 대림토건(주))



위치도



현장사진

나. 주요 대행업무

- 대행기관 : 서울시설공단
- 대행기간 : '26. 1. 6.~12. 31.(11개월 25일)
 - “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협약(5년주기 갱신체결)” 기간 만료일까지
- 대행업무
 - 양재역 공영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
 - 부대시설에 대한 임대차 업무 및 관리
 - 시설물 안전관리, 유지관리 및 개보수 등
- 대행업무 수행
 - “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협약”에 따라 관리대행 업무 수행

※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협약

- 체결일자 : '21.12.31.
- 체결기관 : 서울시 - 서울시설공단
- 대행시설 : 공영주차장 133개 시설
- 대행기간 : '22.1.1.~'26.12.31.(5년간)
- 근거규정 :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1조(사용허가기간) 제1항
5년마다 갱신 협약체결

○ 주차장 운영

주차장명	급지	구획수	운영시간	주차요금			비고
				시간주차	1일요금	월정기권	
양재역	1	894	연중무휴 24시간	400원 (5분당)	28,800원	250,000원	

다. 필요성 및 기대효과

- 민자사업 종료 이후 우리시로 반환되는 양재역 공영주차장은 지하철 3호선 및 신분당선 양재역에 인접한 대규모 주차장으로서 공공성 및 운영 안정성, 지속성 확보가 필요함
- 서울시설공단은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양재역 공영주차장의 관리·운영을 대행함으로써, 축적된 전문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적 운영과 안전한 시설물 관리로 이용 활성화가 가능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10조

제10조(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)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(이하 “관리수탁자”라 한다)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
2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」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
3.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
4. 전통시장인근 100m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20면 이하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경우 해당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
5. 민자사업으로 노외주차장을 설치·기부채납한자(단, 인근에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함)

- 「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9조

제19조(대행사업)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이미 시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와 청소·경비·일상적 시설관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예산조치 : '26년 예산 반영(공영주차장 관리·운영비)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교통실 주차계획과 채한샘(☎ 2122-2363)